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15일, 정희용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희용 의원)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폭염, 한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상고온(異常高溫)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커져 이를 농업재해로 정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업재해 중 기온과 관련한 자연현상으로 한파와 이상저온, 폭염을 규정하고, 이상고온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균형적으로 이상고온 현상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재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폭염 기준은 낮의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로 정의함.

기상청에서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35℃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함.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재해 대책 사업에서는 통상적으로 30℃ 내외의 고온 지속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피해는 ‘폭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온뿐 아니라 가뭄, 시설상태(환기, 냉방장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포괄하여 입식비, 농약대, 대파대 등의 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함.

이상고온은 계절적 평균기온을 초과하는 고온 현상으로, 낮의 일 최고기온이 특정 기준값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폭염과 밤의 일 최저기온이 특정 기준값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열대야를 포함함.

이상고온 현상은 농작물의 생육 부진, 수량 감소, 양분 결핍, 해충 발생,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가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처럼 이상고온은 폭염을 포함하여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지구온난화의 본격화로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감안하면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하여 농업인에 대한 폭 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